KOSHA GUIDE C - 84 - 2013

## 8. 트러스거더 설치 시 안전작업

## 8.1 트러스거더 반입 및 적재

- (1) 운반차량은 정격하중, 적재길이 및 선회반경 등의 현장 및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- (2) 트러스거더 운반시 지정 구간내 제한속도 규정 및 지정속도 운행을 준수하여야 하며, 운반전에 운전자에게 위험구간 및 운행방법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커브길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볼록반사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후진 작업 시 유도자의 유도에 의한 작업을 하여야 하며, 유도자는 운전자 가 보이는 장소에서 유도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 전에 사용할 기계나 기구, 인양고리 등을 점검하고 불량품이 있으면 교체하여야 한다.
- (6) 인양물에 의한 협착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도자 및 근로자는 양중 작업자 가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, 인양 작업 시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.
- (7) 트러스부재 인양에 사용되는 인양용 와이어로프 및 슬링로프는 작업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8) 트러스부재 인양 시 인양용 와이어로프 등은 2줄 걸이로 양방향으로 결속 하여야 한다.
- (9) 슬링로프로 강재를 감을 때 강재모서리와 로프 접촉부에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0) 인양물 적치장소 및 중량물 취급장소는 지반침하에 의한 도괴재해 예방을